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의 입법 평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민지**

국 | 문 | 요 | 약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일환으로, 2018년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신설되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국가의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입법목적 아래 도입되어 시행 약 5년이 되어가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구상권 행사의 현황 및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구상권은 단 한 차례도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입법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현재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는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가 도입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입법목적 달성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상적인 구상권 행사의 한계 및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에 국한된 추가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중 하나로 구상권 행사 주체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구상 금액 산정 방안의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7년 종합대책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9.30.3.357>.

❖ 주제어 :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 비용, 구상권 행사, 성폭력방지법,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보호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중 일부를 재구성,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2018년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7조의3이 신설되었다.¹⁾ 이 중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2017년 종합대책’)²⁾의 개선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201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고, 현재 법 제7조의3제5항에 그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구상권은 소위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³⁾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등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제21대 국회 발의안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등 우리 법제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상권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꾸준히 도입되어 왔고, 지금도 도입이 시도되고 있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1호, 2018. 3. 13, 일부개정]

2)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총괄 하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총 14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여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09.26.)

3) 소위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을 환수 내지 상환하기 위해 구상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로 개별법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왔는데, 어떤 형태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일반적인 기준 내지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환수제도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한균·김민지·장석영·정유나,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226~233면 참고.

나, 그 실효성에 있어 매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⁴⁾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⁵⁾은 모두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비용 징수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행정력 부담, 가해자의 지불 능력 부재시 실제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⁶⁾ 구상권의 통상적인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은 시행 이후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삭제된 바 있고⁷⁾ 이행 관리원의 장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긴급지급액 회수율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구상권 제도는 공통적으로 그 실효성에 있어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지 약 5년이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7조의3제5항이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애초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앞서 언급한 통상 다른 구상권 제도와 같이 그 실효성에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규범적 측면에서 현행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가 법체계적 정합성 등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법 제7조의3제5

4) 의안번호 21020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7.16.

5) 의안번호 211533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2.04.19.

6) 국회사무처, 제3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0. 07. 29. 13면 참고.

7) 보호시설의 장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487호, 1997. 12. 31. 제정] 제8조제3항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비용 구상 시 피해자 위치 노출로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제까지 구상권이 집행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점, 피해자 치료비와 달리 보호시설 입소 비용 등의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등이 고려되어 2015. 6. 22. 일부개정(법률 제13368호)으로 삭제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자스민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1~24면.

항에 대한 입법 평가를 실시(Ⅱ)하고,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한계점(Ⅲ)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Ⅳ)하고자 한다.

Ⅱ.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에 대한 입법 평가

1.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개괄

가.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당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였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하고 여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⁸⁾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2017년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2017년 종합대책은 변형 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응하여 ‘디지털

8) JTBC 뉴스, “아동 음란물 수집만 건 유포…수억 챙긴 일당 붙잡혀”, 2015.09.0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15580(검색일: 2023.08.10.), 연합뉴스,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27만개 올려 1억6천만원 챙겨”, 2016.6.24., <https://www.yna.co.kr/view/AKR20160624085800065?input=1195m>(검색일: 2023.08.10.), 여성신문, “디지털성범죄 OUT…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닙니다”, 2017.08.18.,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62>(검색일: 2023.08.10.), 오마이뉴스, “몰카에 여성들 죽어가는데... 이메일도 안 읽는 SNS업체”, 2017.8.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3919(검색일: 2023.08.10.) 등.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라는 개선과제가 제시되었다.

2017년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개선과제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3월 13일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신설되었고,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⁹⁾

나.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주요 내용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으로 신설된 법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동 시행규칙¹⁰⁾ 제2조의6은 제4항 및 제5항에서 법 제7조의3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구상권 행사 범위의 확대

2018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신설 이후 구상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동조 제3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개정은 없었으나,¹¹⁾ 2020년¹²⁾ 및 2021년¹³⁾의 2차례 개정

9)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심의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한균·김민지·장석영·정유나,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207~208면 참고.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1.] [여성가족부령 제181호, 2022. 11. 11., 일부개정]

11)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상 구상권 행사의 근거 조항인 제3항은 2차례 개정을 통해 제5항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없다.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96호, 2020. 1. 29, 일부개정]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5호, 2021. 1. 12, 일부개정]

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위 및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¹⁴⁾ 먼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촬영물은 성폭력방지법 제14조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로 확대되었고, 이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추가되었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까지 국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로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삭제지원할 수 있는 대상 촬영물 및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제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입법 평가의 필요성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은 제7조의3의 신설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및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제7조의3 중 구상권 행사에 대한 동조 제5항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가 지출해오던 삭제 비용을 최종적으로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일종의 제재로서 비용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는 국가가 소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효율성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 일반의 위법행위를 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 2020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및 2021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한균·김민지·장석영·정유나,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210~214면 참고.

다만,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곧 입법목적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상권은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되곤 하는데,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은 여타 다른 구상권 조항과 달리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비용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의 도입 실익 내지 실효성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8년 9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문 수정 없이 단 3개의 조항·법 제7조의3제5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제5항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및 2021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는 2018년 제도 도입 당시보다 확대된 상황이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시행된 지 약 5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동조 제5항의 입법 평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 조항의 입법 평가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의 의도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 현황 및 2017년 종합 대책 및 국가정책기본계획상 추진 실적, 구상권 관련 제21대 국회 발의안을 통해 구상권 행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구상권 행사 현황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가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2018년 9월 시행 이후 실제 구상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구상권 행사 현황 및 실적은 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행위자에게 행해진 구상권 행사 건수, ② 구상권 행사로 회수된 비용, ③ 구상권 행사 관련 행정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는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가 그 주체이고, 동 시

행규칙 제2조의6제6항에서 구상권 행사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확히 한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구상권 행사 관련 자료를 검색하였다. 그러나 2018년 9월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공시·보고된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상권 행사 건수 및 회수 비용 등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구상권 행사 건수 대비 누계 회수율이나 청구 금액 대비 누계 회수율 등의 산정을 통한 구상권 행사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물론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에 대한 공개된 자료가 없는 것을 근거로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지난 5년 동안의 국정 감사 자료 및 관련 기사를 살펴봐도 실제 구상권 행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20년 여성가족부 국정 감사에서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비용을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으나 구상권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이루어졌고,¹⁵⁾ 관련 기사들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즉, 2018년 시행 이후 지난 약 5년 동안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구상권 행사율 및 삭제지원 비용 회수율은 0%에 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 대한민국 정부,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소관, 2021.03., 23면.

16) 여성신문,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구상권 행사, 지난해 9월 첫 시행 이후 한 건도 없어”, 2019. 02. 13.,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634>(검색일: 2023. 08. 10.), 매일경제 뉴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구상권 청구 쉽지 않네”, 2020. 3. 2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324477/>(검색일: 2023.8.10.), 뉴시스, “불법촬영물 가해자 삭제비용 청구 ‘0건’...인력 60%는 경력 3개월 ↓”, 2020.10.2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1650&cID=10201&pID=10200(검색일: 2023.8.10.) 등.

나. 각종 국가 정책상 이행 상황 및 추진 실적

1) 2017년 종합대책

2017년 종합대책은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개선과제로 발굴, 채택하였기에 그 이행 상황을 살펴보았다.

2017년 12월 여성가족부는 2017년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정책 추진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차관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⁷⁾ 2017년 종합대책의 22개 과제 중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과제의 추진 상황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2018년 6월 개최된 제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구상권 행사 근거를 신설한 개정 성폭력방지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¹⁸⁾ 2018년 10월 개최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¹⁹⁾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라 ‘입법 완료’로 보고되었고,²⁰⁾ 2019년 12월 개최된 마지막 동 협의회에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등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이 입법 추진 성과로 언급되었을 뿐,²¹⁾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과제에 대한 추가 이행 상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2017년 종합대책 이후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20)」²²⁾의 41개 세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

17) “‘불법촬영’근절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6.07.). 보도자료 붙임2.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등 7개 부처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업계, 전문가 및 학계, 피해자 지원단체 등 시민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신규의제 발굴, 정책 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18) “‘불법촬영’근절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6.07.).

19) 여성가족부 차관 주제로 운영되었던 ‘디지털성범죄 민관협의체’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주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로 통합, 격상되었다.

20)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성가족부 장관 주제로 격상”(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0.17.)

21)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2.25) 이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 운영-”(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2. 09.).

22)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04.23.).

데,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과제가 종료되었다는 판단하에 2020년 대책의 세부 과제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국가정책기본계획

제2차²³⁾·제3차²⁴⁾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²⁵⁾의 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그간의 추진 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의 6대 과제 중 하나인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의 세부 과제인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대두된 여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마련(5-2-1-①) 및 사이버상에서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5-2-1-③)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과제 5-2-1-①의 경우 i)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한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2018), ii)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2019) 등이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2021년 개선·보완사항으로 구상권 행사 시 필요한 가해자 정보 수집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및 구상권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언급되었음에도 세부 과제 5-2-1-①은 추진 완료로 종료되었다.²⁶⁾ 심지어 세부 과제 5-2-1-③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이 ‘유포자 대상 디지털 기록 삭제비용 부과’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23)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 2017년 12월에 수립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 6대 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 22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24) 2023년 1월에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 아래 5대 대과제, 14개 중과제, 43개 소과제, 1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5)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 2020년 2월 수립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4대 전략과제, 14개 정책과제가 수립되어 있다.

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시행계획, 2018, 463~464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500~502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2020, 547~549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2021, 527~529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시행계획, 2022, 518~519면 참고.

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찾아볼 수 없었다.²⁷⁾ 나아가, 2023년 올해 수립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은 ‘폭력 피해 지원’을 5대 대과제로 포함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1-2-②)를 세부 과제로 마련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삭제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구상권 행사는 과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²⁸⁾

한편,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2020~2024)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의 세부 과제인 디지털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4-1-3-③)로도 포함되어 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i)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한 구상권 행사 근거 마련(2018), ii) 구상권 청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추진(2020), iii) 디지털 성범죄 정책 연구 추진(2021)을 언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이후 시행계획으로 ‘입법 추진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입법 보완사항 및 입법 추진 검토’를 제시하였다.²⁹⁾ 올해 2023년도 시행계획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디지털 성범죄행위자에 대한 구상 비용 산정의 현실적 방안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보완사항 검토가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구상권 행사 추진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의 입법 지원과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절차 정비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현장 의견 수렴이 추진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³⁰⁾

이와 같이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국가정책기본계획상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현재 진행 중이나, 201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시행계획, 2018, 470~472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511~514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2020, 564~567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2021, 541~544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시행계획, 2022, 532~535면 참고.

28)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 2023, 45~46면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계획, 2023, 216~218면 참고.

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2020~2024) 2021년도 시행계획, 2021, 266면,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2020~2024) 2022년도 시행계획, 2022, 369면~370면 참고.

30)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2023, 326면~327면 참고.

지 구상권과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 구상권 관련 제20대 및 제21대 국회 발의안

201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 이후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구상권 관련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의 입법 효과성 및 부작용, 규범적 측면에서의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소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별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³¹⁾ 및 제21대³²⁾ 국회에 각각 발의되었으나 모두 대안반영 폐기되었다.

두 번째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제21대 국회에 각각 발의되었다. 이 중 제20대 국회 정춘숙 의원안³³⁾은 구상권 행사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 제공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 김정재 의원안³⁴⁾은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31)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18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안번호 2010069,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7. 11. 08.이 발의되었다.

32)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1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안번호 2105014,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이 발의되었다.

33) 의안번호 2023533,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10.31.

34) 의안번호 2107017,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12.29.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세 번째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³⁵⁾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와 같이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20대·제21대 국회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업무 주체를 신설 내지 확대하거나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5건 발의되었고, 이 중 2건이 국회 계류중에 있으나 발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으로 마련된 구상권 조항만으로는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2018년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구상권 행사를 통한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다소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다.

Ⅲ.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의 한계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약 5년의 기간 동안 구상권 행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입법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현재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는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가 통상 구상권 제도가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성폭력방지법에 국한된 추가적인 한계까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도입 전후 시간순에 따라 i) 법 제7조의3

35) 의안번호 2112248,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08.26.

의 입법 과정에서 비롯된 한계, ii)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제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의 한계, iii) 도입 이후 정책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한계로 나누어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의 추가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입법 과정에서 비롯된 구상권 행사의 한계

2018년 신설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해철 의원안³⁶⁾과 남인순 의원안³⁷⁾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³⁸⁾ 현행 구상권 행사 조항은 남인순 의원안의 제3항과 제4항의 경미한 수정만을 거친 것이다. 남인순 의원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구상 비용 산정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며 객관적 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³⁹⁾ 추가 논의 없이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삭제지원 및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내용으로 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경미한 수정만을 거쳐 최종 가결되었다.

위와 같은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입법 과정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36) 의안번호 2009826,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7.10.10.

37) 의안번호 2010069,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7.11.08.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심의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한균·김민지·장석영·정유나,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207~208면 참고.

39) 국회 전문위원실은, “범죄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후 해당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입법례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및 제21조제2항 등이 있는데, 구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비교해 보면, 가정폭력행위자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보호비’가 구상권의 대상이며, 범죄피해 구조금의 경우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데,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지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남인순 의원안에 따라 디지털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 센터의 전체 운영비 중에서 특정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지원 비용을 산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7.11., 11~12면.

은 제3항(현 제5항)에 국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4항(현 제6항)만을 두고 있었는데, 업무 위탁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처리 등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구상 금액 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국가가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의 추산을 통해 그 비용을 근거로 특정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할 금액이 산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구상 금액 산정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2017년 법안 심사과정 당시 국회 전문위원실도 지적한 바 있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구상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계⁴¹⁾ 및 구체적인 구상 금액 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통상 법률안에 구상권 조항이 있는 경우, 구상권 제도의 실효성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곤 한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40) 앞의 주 39) 참고.

41)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은 의원발의·정부제출·위원회제안 법률안 모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제안 법률안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데, 2017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생략되었다. 국회사무처, 제355회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2017.12.22. 4면 참고.

42) 가령, 스포츠 선수 성폭력 및 폭행 사건 발생 시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그들에 대한 치료·임시보호 조치 및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7.16.)은 피해자 보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징수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행정력 부담과 이를 우려해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가해자에게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강제징

구상권 행사는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2017년 당시 국회가 입법부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성폭력방지법상 실제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의 한계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법률 및 시행규칙으로 단 3개의 조항만이 구상권 행사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마련되었을 뿐, 구상 금액 산정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상권 행사 업무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이 행사되었을 리가 만무하다.

나아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국가의 삭제지원은 불법촬영물등의 최초 판매·유포를 비롯하여 이후 불특정 다수에 의해 끊임없이 복제와 유포가 이루어진 촬영물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 행위자 특정 자체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특정될 수 없는 많은 경우 구상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또 다른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3. 도입 이후 정책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구상권 행사의 한계

2023년 현재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은 2018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지역특화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자체 운영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

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낮은 실효성이 지적되면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대안안영 폐기되었다. 국회사무처, 제3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0.07.29. 13면 참고.

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총 16개 지역 17개 기관·단체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⁴³⁾ 이와 같이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은 시행 약 5년이 된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 삭제지원 체계를 통해 삭제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오히려 중복될 수 있는 지원체제로 인해 삭제지원 및 피해자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최소한 삭제지원 경로의 양적 증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행 삭제지원 체계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 법 제7조의3제5항은 구상권 행사 대상을 ‘동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법적 근거가 아닌 여성가족부 지정 지역특화상담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삭제지원 센터 등은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⁴⁴⁾ 다양한 삭제지원 체계는 결국 선택적 구상권 행사로 이어져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과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정의·형평 관념에 반할 수 있고, 2017년

4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시행 2023. 1. 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8 호, 2022. 12. 30., 일부개정]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 및 성폭력방지법 제3조에 따른 지역특화상담소 14곳과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3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인천 소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및 부산 소재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는 2023년 지역특화상담소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삭제요청 기관이다.

44) 여성가족부 지정 지역특화상담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 및 성폭력방지법 제3조,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피해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삭제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아니다. 즉,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을 근거로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물론,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개별 사안마다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입증의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성폭력방지법이 법 제7조의3에 명시적으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법률관계의 다툼없이 신속하게 디지털 성폭력행위자로부터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받고자 하는 입법정책적 고려 및 반영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상환 또한 일률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대책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2018년 정책 도입 이후 삭제지원 경로의 다양화 등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2023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삭제지원 기관·단체 사이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는 법과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구상권 행사는 2018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시행 이후 새로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구상권 행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4. 소결

2017년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임과 동시에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에는 분명하고, 이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구상권 행사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즉,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 조항의 신설은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 법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선지원한 후 범죄, 재난 등의 원인제공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 구상권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개별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법제에서 구상권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법 제7조의3제5항의 입법 정당성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구상권은 행사되지 않은 채 시행 약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가 ‘가해자 책임 강화’라는 본래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구상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고 각종 국가 정책 추진 실적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시행 이후 지난 약 5년간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책임 강화’라는 목적하에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가 도입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 조항에

대한 입법내용의 타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법률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2017년 당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의원발의된 법안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 등을 감안하여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어야 했다.⁴⁵⁾

2023년 현재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입법 과정에서의 결함은 통상적인 구상권 행사 조항의 한계와 더불어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 조항의 추가 한계를 발생시키며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는 그 행사 가능성을 비롯하여 어떠한 재정적 효과가 초래될 것인지 등이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음에 따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가 떠안는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의 추가 예산 투입은 당연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가의 예산이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사용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국가는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도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법안 심사과정에서 구상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여타 개별법에서 저조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및 경제성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왔고, 따라서 높은 수준의 비용 회수를 기대하고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행사 규정을 마련한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적어도 ‘형평, 정의’라는 구상권 제도의 이념,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특정되고 구상 금액이 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현장에서 실천되고 정착되지 않는 한 법 제7조의3은 그 선언적 의미마저 상실할 것이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45) 의원입법은 법안 입안 절차에 있어 의무적인 검토 및 수정 등의 단계가 없어 관계 기관 협의 및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만 하는 정부 제출 법안과 달리 다소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IV. 성폭력방지법상 구상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권 행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⁴⁶⁾ 대표적으로 구상권 행사의 절차적 측면에서 형사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등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은 반드시 관련 법령이 신설되어야 하고, 2020년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징수’를 통해 삭제비용의 회수율을 강화하는 것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⁴⁷⁾

본고는 지면의 한계상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안될 수 있는 여러 개선방안 중 구상권 행사와 구상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구상권 행사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덧붙여,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삭제지원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를 기초로 산출되므로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 주체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구상 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46) 2018년 발간된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방안”은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내용에 반영된 구상권 행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2018년 선행연구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복순·조선주·윤덕경·정수연·김현아,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87~102면 참고.

47) 2022년 수행된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은 본문에서 언급한 개선방안 외에도 i) 성폭력방지법 및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 ii) 구상 비용 산정 및 환수 방안 정비 등을 통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강화, iii)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정비를 통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강화로 나누어 개선방안 및 이에 따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한균·김민지·장석영·정유나,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263~303면 참고.

1.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업무 주체 정비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의 모든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동 시행규칙 제2조의6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업무의 주체로 구체화하되 제2항에서 ‘촬영물등 삭제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삭제지원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업무 중 삭제지원 관련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그 주체가 되고 구상권 행사 업무의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라고 해석되나, 이와 같은 현행 성폭력방지법의 규정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삭제지원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동 시행규칙 제2조의6으로 삭제지원 업무의 위임을 규정한 것은 법규의 종류별로 효력의 우열을 정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및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반한다. 우리 법체계에서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은 각각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이나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⁴⁸⁾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되, 모법에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⁴⁹⁾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부령에만 두고 있다.

한편, 구상권 행사 업무의 경우 위임·위탁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라면 주체에 있어 입법상의 문제는 없다.

48)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2, 5~6면 참고.

49)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2, 486~487면 참고.

다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구상 금액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소요된 경비에 대한 회수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⁵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다성센터에서 구상권 행사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성센터가 구상권 행사 업무도 수행함으로써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업무 전반에 있어 보다 높은 안정성 및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반영한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의 주체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은 반드시 ‘법률’인 성폭력방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성폭력방지법상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인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현행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2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성폭력방지법 및 동 시행령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은 보통 보칙 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특정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위임·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실체 규정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 실체 규정에서 함께 규정해도 무방하다.⁵¹⁾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은 성폭력방지법 제3장 보칙에 규정을 신설하거나 실체 규정인 법 제7조의3에 위임·위탁에 관한 항을 추가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다.⁵²⁾

결론적으로 현행 성폭력방지법 및 동 시행규칙을 근거로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

5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10., 6~7면.

51)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625~626면 참고.

52) 가령, 성폭력방지법 제3장 보칙에 위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취한다면, 위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제35조에 아래와 같이 항을 추가한 뒤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방지법 제35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무를 디성센터로 위임·위탁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에 따른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 주체와 해당 업무들의 위임·위탁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수직적 법체계의 정합성을 충족시킨 다음, 적법한 위임·위탁에 따라 디성센터 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충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구성 등이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원체계 정비를 통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강화

가. 삭제지원 업무의 일원화 내지 다원화를 통한 지원체계 정비

2017년 종합대책 이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보호 체계가 구축되었고, 현재 다양한 기관 및 단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디성센터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총 17개 기관·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삭제지원 업무는 불법촬영물등을 직접 삭제하는 것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확히는 ‘삭제 연계’ 업무라 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업무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이 필요한 상담, 법률·의료 지원과 달리 대면 필요성이 다소 낮은 업무로 피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관계 기관 사이 적극적인 협조하에 삭제지원 업무에 특화된 전문 종사자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의 존재는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보호·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복 지원으로 집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또한 증가하며,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삭제지원 업무를 가장 오랜 시간 수행하며 가장 많은 삭제지원 건수를 처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로 삭제지원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는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대면 위주의 법률·의료·수사 지원 및 심리상담, 거주, 지역 맞춤형 복지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삭제지원

업무는 다성센터로 연계하되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이에 상응하여 다성센터는 삭제지원 업무에 집중하고 그 외 법률·의료·수사 지원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 및 지역특화상담소로 연계하는 것이다. 다성센터로 삭제지원 업무가 일원화되면, 성폭력 방지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업무도 예외 없이 모든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해 행사될 수 있으며, 구상 금액 산정 및 완납 후 처리도 용이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지금과 같이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와 병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삭제지원 업무를 다원화하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각 피해지원 센터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해지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각 피해지원 센터가 다성센터와 동등한 수준으로 온전한 역할을 하는 데 시간적·경제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삭제지원 업무를 다원화하는 경우 다시 i) 구상권 행사 업무를 다성센터로 일괄 위탁하는 방안과 ii)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가 각자 삭제지원 업무와 함께 구상권 행사 업무를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성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의 예산 출처가 달라 구상 금액 납부 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고, 구상권 행사 업무 처리를 위한 위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추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가 삭제지원 및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업무를 병행하는 방안 ii)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삭제지원 업무가 다원화되더라도 피해지원 업무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다성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와의 수평적 협력을 구축하는 등 중앙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구상 금액 산정 및 절차를 위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서식을 통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삭제지원 업무를 다원화하는 방안은 앞선 일원화 방안과 달리 성폭력 방지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 및 성폭력방지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을 근거로 조례 및 사업을 통해 피해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법률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⁵³⁾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주체로 추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업무 중 삭제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각 피해지원 기관 사이 업무를 정비하는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서 제시한 2가지 방안 모두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반드시 구상권 행사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삭제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예외 없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2017년 종합대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책의 통일성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서 제시한 삭제지원 업무 체계 정비방안 중 무엇을 취하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함은 분명하다. 향후 피해지원 기관 사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더라도 업무 사이 관련성이 높아 업무 진행 중 피해지원 기관 사이 소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지원 기관의 업무 전문성 및 종사자 역량을 함께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발생 현황 및 피해 상황 등에 따른 지원 수요, 각 피해지원 센터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법적으로 독립시킬 필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이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⁵⁴⁾ 구체적으로 현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서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중복 지

53)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270~272면 참고.

54)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원을 통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확보한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업무 중 삭제지원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 및 추가 소요 예산,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 구상권 행사 업무 주체 등을 고려하여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 센터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구상 금액 산정 방안의 구체화

가. 구상 금액 산정의 기본 방향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경우 여타 다른 구상권과 달리 구상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에 2018년 수행된 선행연구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삭제 비용 산정을 위한 4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나,⁵⁵⁾ 선행연구의 삭제 비용 산정 방안을 차용하기 보다는 현재 디성센터의 삭제지원 업무의 범위 및 관련 예산 등을 기초로 새로운 구상 금액 산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⁵⁶⁾

성폭력방지법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그 밖에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5) 2018년 선행연구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 및 필요성을 반영하여 4가지 구상권 비용 산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① [1안]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서비스 인력의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하고, 피해자 1인당 소요된 시간을 산출하여 삭제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 ② [2안] 삭제 지원 인력 1인당 시간당 평균 인건비 기준을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매해 공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방안, ③ [3안] 인건비의 복잡성 및 적정성 논란을 피하고 불법촬영물 재유포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 삭제 지원 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및 피해자 1인당 삭제 소요개월 수를 산출하여 산정하는 방안, ④ [4안] 3안과 동일한 산출 방안식을 사용하되, 삭제 지원 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를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방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복순·조선주·윤덕경·정수연·김현아,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75~82면 참고.

56) 2018년 선행연구는 삭제지원 업무의 범위, 누적 자료의 기간이 짧고 관련 조사 자료가 부재하기

2018년 도입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에 소요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고용한 인력을 통한 삭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상 금액 산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항목은 ‘삭제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일 수밖에 없다. 현재 디성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매년 출연금을 중심으로 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매해 예산에 따라 센터에 배당되는 예산 및 삭제지원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도 매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구상 금액의 산정은 매년 당해 예산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산정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도별 확정된 예산 및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바탕으로 구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해당 연도에 실제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에 적절하고, 구상 금액의 현실화 도모라는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2018년 시행 당시 실제 피해자 1인당 삭제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도 구상 금액 산정의 한계로 지적되었으나 삭제지원 업무 시행 약 5년이 된 지금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의 지원 기간 및 주기가 정립됨에 따라 구상 금액 산정을 위한 산출 근거 중 하나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삭제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과 사전 내지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기간의 삭제지원 횟수 및 주기는 다를 것이므로, 디성센터의 운영지침에 따른 실제 삭제지원 기간 및 주기를 반영하여 구상 비용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비용은 매해 확보되는 디성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 지출에 따라 삭제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구상 금액을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구상 금액 산정 방향으로 보인다. 연도마다 확보되는 예산을 반영하되, 집중 삭제지원 기간 및 사전·사후 모니터링이 행해지는 기간별 삭제지원 비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방지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구상 금액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고시로 위임하고, 이를

때문에 분석방법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복순·조선주·윤덕정·정수연·김현아,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74~75면, 82~83면 참고.

‘여성가족부 고시’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⁵⁷⁾

나. 구상 금액 산정 항목 도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의 구상권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일종의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디지털 성폭력행위자라 할지라도 실제 삭제지원 비용을 상회하는 가중한 금액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구상 금액 산정을 위한 고정 항목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다성센터에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삭제지원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다성센터의 업무 중 피해자의 신청, 접수 및 상담, 검색 등 직접적인 삭제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삭제요청을 위한 자료 작성, 사후 모니터링, 미완료건 재요청 업무는 삭제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구상 금액 산정 대상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및 법률·의료비 지원 연계, 디지털 성폭력행위자 검거 등 수사 협조 등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업무라고 보기에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구상 금액 산정 대상 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구상 금액 산정을 위하여 삭제지원 업무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57) 본문의 내용을 반영한 구상 금액 산정에 대한 고시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조의6에 의하여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비용

- 집중 삭제 지원 기간 (이하 별도 표 생략)
- 사후 모니터링 기간 (이하 별도 표 생략)

2. 적용기간 : 2020. 1. 1일부터 2020. 12. 31일까지

〈구상 금액 산정 항목화를 위한 삭제지원 업무 분류〉

담당부서	업무내용		삭제지원 관련성	구상 금액 산정 대상
전화/여성긴급전화1366/ 온라인게시판	피해자들의 신청		○	○
지역특화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삭제 연계		○	○
	자체 긴급 삭제지원		○	× ⁵⁸⁾
	법률 및 의료비지원 연계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등의 신청	접수 및 상담	○	○
		피해촬영물, url 등 검색·확보		
	선제적 삭제 지원	url 수집	○	○
		불법촬영물등의 저장·보관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요청을 위한 자료 작성		○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
	법률 및 의료비 지원 연계		×	×
	사후 모니터링		○	○
	미완료건 재요청		○	○
	디지털 성폭력행위자 검거 등 수사 협조		×	×

향후 보다 정확한 구상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삭제지원 비용 산정에는 디성센터의 인건비 외에도 삭제지원 신청, 접수 단계부터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항목별 예산의 출처가 분산되어 있어 세부적인 비용의 산출이 쉽지 않고, 나아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구상 금액을 완납한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은 피해자의 신청부터 시작되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경우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의 삭제지원 신청 업무 외에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여성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을 통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위기 개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특화상담소는 디성센터로 삭제지원을 연계하는 업무 외 주로 의료·

58) 지역특화상담소의 자체 긴급 삭제지원의 경우 삭제지원 관련성은 있으나, 구상권 행사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 및 성폭력방지법 제3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는 지역특화상담소의 삭제지원에 따른 비용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의 구상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구상 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법률지원 연계 업무를 수행하며 긴급한 경우 자체 삭제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디성센터 외에서 이루어지는 구상 금액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의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의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앞서 제안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디성센터로 구체화하고, 삭제지원 업무를 기준으로 일원화 내지 다원화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은 이와 같은 구상 금액 산정의 난점으로 작용할 요소를 감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각호의 디지털 성범죄는 향후 어떤 형태로 그 범위가 확장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확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비용 등 디지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전체 예산의 증가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상환받을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구상 금액 산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의 관리 및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V. 맺음말

입법은 정책의 시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국가의 정책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입법하려는 내용 및 법령체계, 각 법령 유형별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입법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입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고, 결국 이는 법률 규정의 정당성 유무로 이어져 사문화되기에 이른다.

2017년 종합대책의 추진 일환으로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디지털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이 신설되어 시행된 지 약 5년의 시간

이 흘렀다.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으로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많은 점이 보완되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할 수 없으나, 성폭력방지법상 국가의 구상권 제도는 ‘가해자 책임강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이후 지난 약 5년간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입법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가 도입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만을 부여할 수 있을 뿐이다.

2018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입법 과정부터 그 타당성 여부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비롯한 정책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등 현재 디지털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7년 종합대책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김한균·김민지·장석영·정유나, 새로운 정책수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박복순·조선주·윤덕경·정수연·김현아,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2.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 2023.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2020~2024) 2021년도 시행계획, 2021.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2020~2024) 2022년도 시행계획, 2022.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2023.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시행계획, 2018.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2020.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2021.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시행계획, 2022.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시행계획, 2023.

2. 법령 개정안 등

의안번호 2009826,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7.10.10.

의안번호 2010069,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7.11.08.

의안번호 2023533,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9.10.31.

의안번호 21020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07.16.

의안번호 2105014,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등 12인), 제안일자 2020.11.05.

의안번호 2107017,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20.12.29.

의안번호 2112248,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1.08.26.

의안번호 211533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22.04.19.

국회사무처, 제355회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의록, 2017.12.22.

국회사무처, 제3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의록(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0.07.29.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17.1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9.10.

대한민국 정부,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소관, 2021.03.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2014.11.

3.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04.23.).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성가족부 장관 주제로 격상”(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0.17.).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2.25) 이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 운영-”(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09.).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 시행-”(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09.26.).

“‘불법촬영 근절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6.07.).

4. 신문기사

뉴시스, “불법촬영물 가해자 삭제비용 청구 ‘0건’…인력 60%는 경력 3개월↓”, 2020.10.27.

매일경제 뉴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구상권 청구 쉽지 않네”, 2020.3.29.

여성신문, “디지털성범죄 OUT…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닙니다”, 2017.08.18.

여성신문,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구상권 행사, 지난해 9월 첫 시행 이후 한 건도 없어”, 2019.02.13.

연합뉴스,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27만개 올려 1억6천만원 챙겨”, 2016.6.24.

오마이뉴스, “몰카에 여성들 죽어가는데... 이메일도 안 읽는 SNS업체”, 2017.8.25.

JTBC 뉴스, “아동 음란물 수십만 건 유포…수억 챙긴 일당 붙잡혀”, 2015.09.01.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for digital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ts effectiveness under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Kim, Min-Ji*

As part of the improvement tasks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Digital Sexual Violence>, which was jointly established and announced by relevant ministries in September 2017, Article 7-3 of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2018: The State may provide victims who have suffered damage with support for deleting illegal photographs, and the expenses incurred in deleting photographs shall be borne by sex offenders and where the State pays the expenses incurred in deleting photographs, it may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gainst sex offenders. It has been about 5 years since the state's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gainst sex offenders of digital sexual violence under Article 7-3 was introduce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but it appears that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has not been exercised even once and no legislative supplement has been made. The reason can be seen as the limitations of the normal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the additional limitations limite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under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According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ercising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ensure effectiveness,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reorganize the subject of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and support system.

❖ Key words: Digital Sexual Violence, the Expenses incurred in deleting photographs, etc.,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Digital Sexual Violence Prevention